

# 전후 중국잔류일본인의 귀환에 관한 연구\*

## - 기민정책을 중심으로 -

이초희\*\*  
chinachohee@naver.com

### <目次>

- |                       |                           |
|-----------------------|---------------------------|
| 1. 서론                 | 2.2 중국잔류일본인의 귀환과정         |
| 2. 중국잔류일본인의 형성        | 3. 중국잔류일본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민정책 |
| 2.1 일본정부의 귀환에 관한 정책기조 | 4. 결론                     |

主題語: 중국잔류일본인(Japanese Left-Behind in China), 기민(The rejection policy), 귀환, 잔류고아(Japanese orphans), 잔류부인(Japanese women remaining in China), 중국 귀국자 지원(The support for people returning from China)

## 1. 서 론

2001년 12월 7일, ‘중국잔류부인’ 2명, ‘중국잔류고아’ 1명이 도쿄 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 구집단소송’을 제기 했다. 또, 다음 해인 12월 20일에는 동일한 소송을 ‘중국잔류고아’ 629명이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원고 측인 ‘중국잔류고아’의 수는 2,000명을 넘게 된다. 이는 후생성이 파악하고 있는 ‘중국잔류고아’의 8할 이상에 이르는 수치였다. 2005년 7월 6일, 처음으로 오사카지방법원이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다. 판결의 내용은 ‘원고 측의 현실을 간과 할 순 없지만, 소승을 기각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잔류고아’의 패소는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잔류일본인’의 문제가 새롭게 대중의 주목을 모으면서, 일본 내부적으로 ‘끝나지 않은 전후’라는 인식이 강하게 대두 되었다.

‘잔류일본인’ 문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잔류 일본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다. ‘잔류일본인(残留日本人)’은 패전 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국에 남게 된 일본인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중 ‘잔류고아’는 전후의 만주(현 중국 동북지구)에

\* 이 연구 성과는 2017년도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 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서 전쟁의 혼란 속에 부득이하게 중국에 잔류하게 된 12세 이하의 일본인 아이들을 말한다. 이것은 일본정부에 의해서 내려진 정의인데, 마치 전쟁의 혼란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중국에 남겨진 아이들이라는 인상을 전한다. 아라라기 신조(蘭信三)는 ‘중국 잔류 고아’의 형성원인을 전후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기민(棄民)정책의 시행 때문이라 지적하고 ‘중국 잔류 고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의(定義)가 지닌 정치적 성격을 비판한다.<sup>1)</sup>

폐전 이후 ‘잔류 일본인’은 잊혀져왔다. ‘중국잔류일본인’은 1980년대에 들어서, ‘잔류고아’가 ‘전쟁고아’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신문이나 TV에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가 제작되어 방영되기도 하였다.<sup>2)</sup> 하지만, 언론이나 미디어가 중심이 되어 이슈가 되었던 탓에 중국잔류일본인은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본격적인 학술연구는 좀처럼 전개되지 않았다.

이윽고 1980년대 후반부터 스스키 토모유키(鈴木智之)와 정영혜(鄭瑛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전개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라라기 신조의 『「中国帰国者」の生活世界』(2000)는 일본사회에 있어서 존재의 특질, 역사적 배경, 생활실태, 2, 3세의 적응문제, 월경하는 중국귀국자 2, 3세, 그리고 양부모문제와 중국귀국자의 중국 사회와의 관련을 고찰하고 있다.<sup>3)</sup> 2009년 출간 된 아라라기 신조와 총 27명이 공동 집필 한 『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는 다양한 시점에서 중국잔류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개인의 라이프스토리를 다루어 미시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연구가 담겨있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잔류일본인의 중국에서의 생활기록을 중심으로 한 서적이 출판되었다. 중국 측의 많은 연구가 전후(戰後) 또는 전중(戰中)에 집중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일본인의 동북이민을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침략의 일환으로 고찰한 것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의 연구는 아직 중국잔류일본인의 개개인의 기록에 머물러, 본격적인 학문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에 가깝다. 한국에서의 연구는 2010년에 들어와 시작되었다. 중국귀국자 지원정책을 분석한 연구 송석원(2013)의 연구, 개척단 농민의 사례를 중심으로 만주지역 일본인의 귀환을 다룬 연구 김영숙(2010)의 연구가 있다. 그 외에 본국 귀국자라는 다중적 아이덴티티의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 현무암(2013)의 연구 등이 있다. 유일한 번역본으로 이데 마고로쿠(井出孫六)의 『중국잔류일본인 -벼려진 60년-』이 있다.

일본의 연구가 상당량 축적된 것에 비해 중국은 대부분 개개인의 기록이나 생활수기에

1) 蘭信三(2009)『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勉誠出版、p.49

2) 잔류고아나 잔류부인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드라마’는 1980년에 제작된 NHK의 「再会—35年目の大陸行」을 시작으로 중국 동북부에 남겨진 잔류고아를 방문해 잔류고아의 귀국촉진을 강하게 호소했다. 또 1989년에 NHK 제작의 「わすられた女たち」는 국교정상화 후에도 중국에 잔류를 강요당하고 있는 잔류 부인들의 모습과 그 속내를 사실적으로 다루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작품으로는 1991년 아마자키 토미코(山崎富子)의 「大地の子」가 있다.

3) 蘭信三(2009)『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勉誠出版、pp.22-23

머물러있고, 한국의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최근의 연구는 2·3세의 아이덴티티와 일본에서의 생활적응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생활안정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후처리와 역사인식을 투영하는 전쟁피해자로써의 잔류일본인의 위치를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패전 후의 극심한 혼란과 전후 중일관계 속에서 중국잔류일본인의 발생 원인이 된 기민정책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전후(戰後) 국민을 버린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출발점이며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의의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송석원(2013)의 지적처럼, ‘새로운 지원책’<sup>4)</sup>은 일본정부와 일본에 귀환 한 중국잔류일본인의 이도저도 아닌 타협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기민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인정 없이는, 잔류일본인의 존재의 정당성은 부정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기민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중국잔류 일본인 귀환과정이라는 역사적 사례를 다루어 중국잔류일본인의 형성 원인이 된 일본정부의 기민정책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일본사회에 되묻고 있는 전후 기민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잔류일본인 문제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논문의 특성상 선행연구에 관한 문헌 및 논문, 일본의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문헌과 정부 간행물, 신문 및 각종 통계 자료를 토대로 비교 및 분석을 한다.

## 2. 중국잔류일본인의 형성

### 2.1 일본정부의 귀환에 관한 정책기조

민주에의 개척단은 국책으로 시행되었고, 개척단의 배치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국방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1945년 4월 5일 소련이 일소중립조약의 폐기를 통보하자

4) 2008년 1월부터 중국 귀환자에게 새로운 지원책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지원책을 내 놓았지만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초 노령 연금의 지급 - 귀국 전의 공적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만 아니라 귀국 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특례적으로 보험료 추납을 인정하고 납부에 필요한 금액은 전액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전액의 노령 기초 연금을 지급하게 한다. 노령 기초 연금을 보완하는 지원 급부 노령 기초 연금 지급과 더불어 그 사람의 속하는 가구의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급부를 실시한다.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 지원 지역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중국 잔류 일본인이 쉽게 참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지역 안에서 이해, 보호와 서로 지지 등 지역으로 안정되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중국 잔류 일본인이 가까운 지역에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지원을 실시한다.

대본영(大本營)은 본토방위를 위해 만주지역을 절대적 방위지역으로 결정하고, 만주의 3/4을 지구전(持久戰)을 위한 전장(戰場)으로 정한다고 발표한다.<sup>5)</sup> 당시 만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일본인들을 위한 보호에 관한 정책은커녕, 개척단에게는 전황(戰況)에 대한 정보조차 일절 전하지 않았다.

소련군침공직후인 8월 10일, 대본영은 ‘조선은 방위(防衛), 만주는 전 지역 포기도 가능’이라고 하는 명<sup>6)</sup>을 내고, 관동군은 지역의 방위와 민간인의 보호를 포기한 채 철수한다. 결국, 개척단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관동군에게 버림받고 스스로 피난의 행렬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관동군의 명령으로 집단자결을 하는 개척단도 많았으며, 가혹한 피난의 과정 가운데 병사자는 6만 6980명, 사망자는 7만 8500명에 이르렀다.<sup>7)</sup> 일본정부는 만주이민정책이라는 국책을 시행하였고, 관동군의 철수라는 방침으로 개척민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 근본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패전 전후 일본정부의 해외 거류민에 대한 정책기조는 현지 잔류 유도와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구호가 시급한 일본인의 제한적인 송환이었다. 즉 일본정부는 약 66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해외 거류 일본인들이 일거에 본토로 귀국하면서 초래 될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해외 일본인들이 본토에 대거 유입되면 주택·식량·실업 등의 각종 민생문제의 악화도 일본정부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sup>8)</sup> 따라서, 당시의 많은 정책 자료에는 ‘군인을 포함한 일본인을 가능한 현지에 잔류시키고, 현지부흥과 발전에 협력을 유도해, 일본의 영향력보존을 도모’라는 현지 잔류유도와 정착의 방침을 고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8월 14일 어전회의<sup>9)</sup>에서 포츠담선언 수락이 결정되자, 외무성은 「3개국선언 수락에 관한 훈전(訓電)」에 의해 거류민은 가능한 한 현지에 정착시키는 방침을 취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거류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8월 24일에 작성된 내무성관리국 문서를 통해서도 ‘현지잔류유도’ 방침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sup>10)</sup>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으로 생명과 재산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일본 국내의

5) (大陸令1340号、1945年5月30日) 庵谷磐(2009)「中国残留日本人支援施策の展開と問題点」『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勉誠出版、p.222

6) (大陸令1374号、1945年8月10日) 위의 글

7) 滿州開拓史刊行会編(1980)『滿州開拓史』、pp.436-437

8) 이연식(2014)「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동북아역사논총』46호

9) 어전회의(御前會議)는 제국주의 일본에서 전쟁의 시작과 종료를 결정한 정부 회의이다.

10) 内務省監理局「戦争終結ニ伴フ朝鮮台灣及樺太在住内地人ニ関する戦後措置要領(案)」日本 外務省 16 차 공개문서 마이크로필름 Reel No. K'0003「太平洋戦争終結による在外邦人保護引揚關係難件：国内受入体制の整備関係、輸送関係」에 수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현지에 잔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기조는 패전상황에서 해외 일본인 귀환에 관한 일본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1945년 9월 5일 종전처리회의 결정을 통해 해외 일본인의 수송·수용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나, 9월 18일 종전사무연락위원회 간사회에서는 여전히 현지 잔류를 극력하게 유도하되, 귀환 이외에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 한하여 본토로 수송하는 등의 기준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9월 24일 차관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GHQ(General Headquarters)의 송환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해외 일본인에 대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표1> 패전 후 해외 거류민에 대한 결정 및 지시에 관한 내용<sup>11)</sup>

패전 후 해외 거류민에 대한 결정 및 지시	내용
8월 9일 대본영참모총장지시 (參謀朝枝繁春大佐關東軍에의 전달)	「가능한 많은 일본인을 대륙의 일각에 잔류하도록 계획할 것. 잔류하는 군, 민간인의 국적은 어떻게 변경해도 무방」(大陸命 第1374号 細則[2])
8월 14일 외무성의 재외공관에 대한 「3개국선언 수락에 관한 훈전(訓電)」	「거류민은 가능한 정착의 방침을 고수할 것」
8월 26일 「관동군방면 정전상황(停戰狀況)에 관한 朝枝參謀의 보고서」	「만주, 조선재류방인·군인 180만 명에 대해서 현지재류, 국적이탈의 방침」
8월 26일 내무성관리국 극비(極秘)	「재류내지인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조기(早期)에 무질서하게 귀환을 결정하게 할 필요 없이...」
8월 29일 대동아성(大東亞省) 「재중국거류민이익보전대책의 건」	「중국거류민은 가능한 중국에 귀화하도록 할것」
8월 31일 「전쟁종결에 수반되는 재외방인에 관한 선후조치요령」	「과거통치의 성과에 비추어 장래를 위해 가능한 현지에서 공존친화의 결실을 나타내도록 인고와 노력을 하여서...」
9월 24일 차관회의 결정	「해외부대 및 해외방인에 관해서는, 극력하게 해외에 잔류 시킨다.」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본영, 군, 내무성, 외무성, 대동아성, 차관회의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지시와 결정은 군인을 포함한 일반 일본인을 가능한 현지에 잔류시키고, 현지부흥과 발전에 협력을 유도해 일본의 영향력유지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정부는 패전 후에도

11) 廉谷磐(2009)『中国残留日本人支援施策の展開と問題点』『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勉誠出版、pp.223-224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만주 등에 획득했던 여러 가지 권익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고 잔류와 정착이라는 기민의 선택지를 택했다.

패전 당시의 여러 가지 국내사정이 일본정부에 의해 현지정착을 기본방침으로 하는 요인이라고 되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면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는 연합국과의 사이에서 국제법에 의한 패전처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 국제정세에 대한 무감각하고 수동적인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본정부의 정책여지를 협소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미국의 주도하에서 귀환체제가 구축되어 일본정부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의 일본정부는 정착과 귀환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고, 패전국이라는 현실 아래 미국 등의 상대국의 호의를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무능함을 보였다. 결국 패전 후, 일본정부의 내부에는 ‘거류민 보호’라는 이념이 근본적으로 누락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기민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2 중국잔류일본인의 귀환과정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략과 전쟁 수행을 위한 정책으로 이동했지만, 패전 후 일본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현지에 남게 된 사람들이 잔류일본인이다. 구만주국 지역으로부터 민간인의 귀환은 종전 다음해인 1946년 5월6일에 시작해서 이 전기 집단귀환(1946년 48년)으로 일본에 귀국했다. 그러나 구만주국지역을 둘러싼 국민당군과 팔로군(후에는 인민해방군, 중국공산당)의 공방이 격화되어 이 지역에서의 귀환은 난항을 겪게 된다.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정(1949년 10월)과 일본정부의 반공(反共)정책으로 귀환사업은 일시중단 되어버린다.

민간 기관을 통한 교섭으로 1953년에 후기 집단귀환(1953년-58년)이 재개되었으나, 그곳에 거류하고 있던 일본인(그 중에서도 잔류부인)의 놓여 진 상황은 중국인과의 결혼과 출산 등으로 복잡해졌고, 귀환은 전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1956년 4월1일 여전히 6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남아있었고, 집단귀환이 종료된 58년 7월 당시에도 약 3만2200명이 끝내 귀환하지 못했다.

소련과의 국교 회복과 유엔가입 전망이 밝아진 것을 마지막으로 1956년 12월 14일 총사퇴를 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내각의 뒤를 이어, 자민당 대회의 결선 투표결과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물리치고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이 수상으로 취임한다. ‘대일본주의의 환상’, ‘모든 것을 버릴 각오’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식민주의를 엄격하게 비판해 온 이시바시 내각의 등장은 중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2개월 뒤에

병환으로 사임하게 된다. 그의 뒤를 이어 1957년 외무장관이자 부총재였던 기시 노부스케가 수상으로 선출된다. 만주국의 산업부 차장으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내각의 상공장관이 된 기시는 전후에 A급 전범으로 기소된 이력을 가진 인물로 중일관계 개선에 대한 생각은 이시바시와 180도 달랐다.

기시 내각 발족 직후 영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금수(禁輸)조치를 철폐하자, 기시는 곧바로 유감표명의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에 가담한다. 또한 중국무역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면서 1958년 중일관계가 나날이 협약해지는 원인을 제공한다.

결국, 기시정권의 반공(反共) 정책의 결과 인도적 문제로서 국교정상화와 무관하게 일본적십자와 중국홍십자회 사이에 계속되어 오던 후기 귀환도 이로써 중단 되고 중국잔류일본인들은 오랫동안 방치되고 만다.

전기는 GHQ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후기는 일본과 중국 측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만주로부터 귀환이 진행되었다. 당시 귀환인 수용을 후생성이 담당하였는데, 중국 측과의 절충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외무성)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점령 초기인 1945년 10월 25일 GHQ가 일본 정부의 외교 기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외무성은 귀환 업무에서 제외되고 있었다.<sup>12)</sup> 점령기가 끝난 1952년 이후에도 외무성이 귀환 업무에 복귀한 적은 없었다.

후기집단귀환은 민간의 주도로 1953년 3월부터 1958년 7월까지 행해진 중국에 있는 미귀환자를 귀국시키기 위한 집단귀환이었다. 일본3단체(일본적십자사, 중일우호협회, 일본평화연락회)와 중국 홍십자회가 교섭을 진행해, 종결할 때까지 3만5000명을 귀국시켰다.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는 말로 상징되는 상황아래 1958년 말부터 ‘미귀환자 조사’를 실시해, 국가가 미귀환자의 호적처리를 하는 특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여, 1959년 3월에 ‘미귀환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성립했다. 전후처리를 서두른 정부는 생존자 다수의 정보와는 관계없이, 중국에 거류하고 있던 약 1만4000여명에 대한 ‘전시사망선고’를 행했으며, 그들의 호적을 말소하고, 사실상 귀환사업을 종료했다.

그 결과, 약 1만 여명에 이르는 여성과 아이들이 중국에 남겨져, 30년 이상 잔류를 강요당하게 된다. 잔류일본인과 후기집단귀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잔류일본인의 역사를

12)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기본방침은, 일본군대의 본국송환은 포츠담선언에 근거하여 연합군 측의 의무로 판단하고 일반인의 송환은 일본정부의 의무이며 인도적 견지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방관적인 태도로 인해, 일본인의 귀환 업무가 진척되지 않자, GHQ는 10월 12일 귀환 업무의 중앙 책임 관청을 정하라는 통고를 일본 정부에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외무성의 정황 인식 마비와 무대책의 모습을 보이자 10월 25일 GHQ는 일본정부(외무성)의 외교 기능의 전면적 정지를 통고한다.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후기귀환 사업의 강제적인 종료 후에 중국에 남겨져 30년 이상 잔류를 강요당한 일본인들, 그들을 우리는 ‘중국잔류일본인’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잔류일본인은 이 후기집단귀환으로 일본에 귀환하지 못한 사람, 중일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1972년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중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혈육을 찾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수동적인 국가에 기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혈육을 찾으려 노력해왔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민간단체인 ‘중일우호 손을 잡는 모임’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1974년 8월 15일부터 ‘生き別れた者の記録’이라는 ‘혈육 찾기’를 연재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중국 잔류고아’의 존재가 일반에게 재차 각인되기 시작하였다.

후생성이 민간보다 늦게, 각 신문사의 협력을 기초로 공개조사에 나선 것은 국교정상화가 있고도 3년이 지난 1975년 3월부터였다. 1981년 1월까지 9번의 조사가 이뤄진 것에 비해 같은 기간 민간에 의한 조사는 아사히신문의 게재를 통해서 16회나 진행되었다. 잔류고아의 방일조사가 시작된 것도, 국교회복후 9년이 지난 1981년 3월이 되어서였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일본정부로 인해서 잔류일본인들의 귀국은 순탄치 않았다. 국가는 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보호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잔류일본인들을 중국에 장시간 방치하였다.

현무암(2013)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패전 당시 13세 이상은 자신의 의지로 남게 되는 잔류부인으로, 13세 이하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게 되는 잔류고아로 분류했다고 한다. 잔류부인은 개인적 의지에 의한 잔류자로 보고 귀환의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애매한 분류 기준은 ‘중국잔류 일본인’의 귀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잔류 일본인의 형성의 주요한 요인은 결국 이러한 국가의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고 현무암은 논한다.<sup>13)</sup>

중일국교정상화와 함께 베이징에 일본대사관이 개설되었다. 대사관에는 잔류일본인들의 편지가 쇄도하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외무성의 반응은 둔감했다. 국교회복은 되었지만, 잔류일본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결여되어있었다.

일본정부와 달리 중국 측은 공안국을 통해서 2개월 뒤, 중국의 오지(奥地)까지 중일 국교회복을 주지시키고 있었다. 귀국희망조사가 집약되어 중국 측의 방침이 결정되었던 1973년 5월, 일본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은 현재 중국에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중국인 가정의 기족인 된 일본인이 약 5천명이 있고, 그 중에서 중국에 영주하거나, 귀국하고 싶어

13) 현무암(2013)「중국잔류 일본인을 둘러싼 포섭과 저항 : 본국 귀국자라는 다중적 아이덴티티의 가능성」『일본비평』제8권, p.128

하거나, 일시적으로 고향 방문을 하려는 자가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희망하는 대로 해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처를 보여줬다. 그런데, 사흘 뒤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중국에 있는 일본인으로 중국인의 아내나 가족이 되어있는 사람들의 고향방문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전의 발언을 고향방문에 역점을 둔 설명으로 수정하였다. 국교정상화가 되고 8개월이 지나도 일본정부 측으로부터 잔류 일본인 수용에 대한 확실한 방침이 제시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저우언라이로서는 신경이 쓰였고, 고향 방문이라는 이름의 일시 귀국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정치가다운 판단을 한 것이다.<sup>14)</sup>

중국잔류일본인의 대부분은 원래 만주농업이민이었다. 일본인의 만주 이주는 개인적 동기나 필요성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 근본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국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sup>15)</sup> 만주국이라는 식민지적 상황아래 맞이한 패전으로, 일본제국과 만주국이라는 보호막을 잃고, 그들은 공공연히 패전 후의 중국 사회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또한, 국공내전의 재개와 격화에서 무정부적 상황아래, 생사를 오가며, 중국인가정에 몸을 의탁하여 아내와 양자가 되는 것 말고는 생존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결국 많은 잔류일본인들은 대부분은 그대로 ‘잔류부인’이 되고 ‘잔류고아’가 되었다. 잔류부인과 잔류고아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외면과 기민정책의 과정 속에서 생겨났다.

### 3. 중국잔류일본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민정책

전기 집단귀환은 중일 양국의 국가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후기집단인양은 독립된 국가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 중일 양국은 당시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당시의 냉전구조가 집단귀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양국 모두 국가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에 의한 국민국가의 재건이나 국민통합문제 등의 여러 가지가 귀환사업을 규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후기 집단귀환과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국민통합문제와 관련되어, 집단귀환의 지원 대상을 제한하였다.

후기집단귀환은, 1952년 12월의 제 1차 북경방송<sup>16)</sup>을 계기로, 일본정부가 아닌 민간의 주도

14) 이데마고로쿠(井出孫六)저, 임성모 역(2012)『중국 잔류 일본인』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107-139

15) 김영숙(2013)「일본의 패전과 만주지역 일본인의 귀환」『동학사학연구』제122집, p.282

16) 중국은 북경방송을 통해 중국에는 약 3만 명의 일본 거류민이 있으며, 거류민 외에 소수의 전범이 있다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일본 거류민에게는 귀국을 원조할 생각이며, 일본 측이 선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중국정부는 그들의 귀국을 원조하도록 노력할 것 등에 대하여 일본 측에 전달하

로 일본 3단체(일본적십자사, 일중우호협회, 일본평화연락회)와 중국 홍십자회가 주체가 되어 교섭<sup>17)</sup>하고, 다음해 3월부터 귀환이 재개되었다. 종결된 1958년 7월까지 21회 진행되었고, 약 3만 5000명이 일본으로 귀환했다. 총 21회의 귀환이 진행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북경협정 후에 일본의 3단체는 일본인 귀환과 재일중국인 및 유골의 송환 등의 문제로 일본정부에 대해 중국홍십자회 대표단의 방일을 촉구하지만, 일본정부는 ‘시기상 조’라며 거부하였고, 전범의 인양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에 중국은 1953년 11월 21일, 제 7차 일본인귀환을 끝으로 일본인 집단귀환을 중단한다고 발표한다.<sup>18)</sup> 귀환이 중단 된 직후 귀환재 개에 앞장선 것 역시 일본정부가 아닌 3단체였다.

국가레벨에서의 유일한 접촉이었던 제네바총영사 간 교섭에 있어서도, 일본정부는 전범의 귀환문제, 행방불명자의 조사를 교섭의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그 속에, 일반 잔류인에 대한 교섭을 언급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sup>19)</sup>

일본정부는 일본에 귀환한 고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중국에 잔류하고 있는 고아에 대해서는, 거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1953년의 일본3단체와 중국 홍십자사의 교섭에서는, 고아에 대해서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후, 고아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재교섭도 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일본정부는 고향방문 및 재도항자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3단체와 갈등을 겪는다. 전후 국가의 기민으로 중국의 농촌의 가난한 가정으로 들어간 잔류일본인들에게 고향방문을 위한 자비부담은 일본입국금지 조치나 다름없었다.

통상적으로 나가사카국기사건<sup>20)</sup>을 계기로, 중일관계가 전면적으로 단절되었고, 집단귀환도 종결되었다고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중일관계의 전면적인 단절 선언이 발표된 뒤에도, 중일 간 무역의 재개나 인적교류 등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유일하게 재개되지 않았던 것은 집단귀환이었고, 잔류일본인을 둘러싼 교섭조차도 행해지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귀환을 재개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의지나 열의도 보이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또한 중국 홍십자회로부터 일본 삼단체 앞으로 전해진 전보를 중국 측의 후기집 단인양을 종결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해 왔다. 당시 일본정부는 중국적시정책을 평고 있었다.

---

였다.

- 17) 일본정부는 중공(中共)을 협상상대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에, 민간의 3단체가 정부를 대신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을 수락하였다.
- 18) 田恒主編(1994)『戦後中日関係史年表:1945-1993』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p.38
- 19) アジア局第二課(1956)『中共における消息不明者の調査に関する件』、오일환(2007)『1950年代 在中日本人 引揚問題를 둘러싼 中日間협상』『한일민족문제연구』에서 재인용
- 20) 나가사카국기사건이란, 1958년 5월 2일, 일중우호협회나가사카지부가 주최한 중국우표전시회에서 일어난 우익단체에 의한 중국국기의 훼손사건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해진 전보의 내용은 집단귀환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한 것이 아닌, 중국인과 결혼 한 일본여성의 고향방문(일시귀국)에 대한 원조를 잠시 중지하겠다는 의미였다.

또, 후생성 자료에 의하면, 후기집단귀환이 종결된 후의 10월에 중국홍십자회로부터 다시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귀국을 원조하고 싶다는 취지의 북경방송이 있었다.<sup>21)</sup> 이러한 중국 측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무응답으로 집단귀환은 종결한 채로, 개별 귀환정책을 취했다.

미나미 마코토(南誠)는 2000년 12월에 외교 사료관이 공개한 ‘귀환관계’사료에서, 집단후기 귀환 종결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는 중국 측의 귀환 재개의 호소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집단귀환을 종결시키려는 생각이 일본 측에 있었다고 논한다.<sup>22)</sup> 후기집단귀환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킴으로 당시의 냉전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중일관계의 전면단절로 인해 미귀환자를 어쩔 수 없이 구제 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일본사회 내부로 인위적으로 형성해 갔다고 볼 수 있다. 후기집단귀환의 종결로 인해 잔류일본인이 된 사람들은, 후기집단귀환의 과정에서 배제 되면서 자연스럽게 ‘잔류’를 강요당한 것이다.

또한 후기집단귀환의 대상자는 제한적이었다. 일본정부가 귀환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억류자 즉, 어떠한 중국 측의 권력이 작용해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이다. 당시, 일본 측의 자료에서 중국에 억압 된 일본인은 전범, 유용자(留用者)<sup>23)</sup>와 일반 잔류인이 있었다. 전범이나 유용자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중국 측의 권력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일반 잔류인은 달랐다. 또한 일반 잔류인의 귀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잔류일본인의 대부분은 일반 잔류인에 속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집단귀환을 둘러싼 교섭에 있어서, 일반 잔류인의 교섭은 그다지 중요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중국잔류 일본인 중에서, 고아이외에는 중국인과 결혼한 일본부인이 많았다. 후기 집단귀환이 진행되면서, 일본정부가 제안한 귀환대책에 의하면, 중국인 아내를 둔 일본남성은 귀국이 가능했지만,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일본부인은 귀국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귀국을 거부당한 일본부인이 귀국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혼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계중심의 귀환 조건은 일본부인에게는 잔인하고 가혹한 조건이었다. 일본부인의 영주귀국은 이혼이

21) 厚生省援護局(1963)『統統引揚援護の記録』、p.456

22) 南誠(2006)「『中国残留日本』の形成と記憶」『アジア遊学』85

23) 일본 패전 후, 중국에 머무른, 팔로군(인민해방군의 전신의 하나)의 요청으로 국민당과의 전쟁에 협력한 사람들. 대부분은 구만주(중국동북부)에 있었던 기술자나 군인으로 8천-1만 명. 군사지도, 철도, 탄광, 공장, 병원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있었다. 1953년부터 58년에 걸쳐 귀국. 중일국교정상화후의 77년, 전국의 유용자들이 ‘중국귀국자우호회’를 만들었다. (2012年9月26日,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조간)

조건이었다. 혈육을 보기 위한 고향방문도, 1955년인 이 시점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1956년 5월 29일, 텐진(天津)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고향방문 문제가 완화되었다. 텐진협정을 받아들여, 많은 일본부인(1956년 8월 78인, 9월 137인, 1957년 5월 871명)은 혈육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했다. 그러나 제3회 고향방문 때에, 일본에서 중국인(화교)과 결혼한 일본인여성이 폐전 직후 중국으로 도항했는데, 귀환선에 편승해 일본을 방문하는 ‘재도항자문제’가 일어났다. 일본정부는 이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고, 일본부인의 고향방문문제를 포함해 재검토를 결정한다. 그 결과로, 왕복운항 운임의 편도를 일본부인의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내 놓는다.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고향방문부인의 수는 58년 5월 27일의 제19차 집단인양 98명뿐이었다. 왜냐하면, 일본부인의 대부분은 폐전 직후, 가난과 빈곤에 허덕이는 중에 중국농촌의 가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편도의 운임을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편도운임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결정’은, 사실상 일본부인의 고향방문을 제한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조치라고 밖에 해석 할 수 없다.

잔류일본인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구제의 노력에 태만하며, 비인도적인 정책으로 가능한 현지에 잔류하게 했던 일본정부는 잔류일본인들을 중국에 방치시켰고, 오랜 시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의 초점은 오직 전범을 귀환시키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고, 잔류고아나 잔류부인의 귀환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본토(내지인) 중심의 전후 거류민에 대한 현지 정착의 방침을 고수했던 것처럼, 일본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잔류 일본인들에 대해 제한적이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중국잔류고아와 부인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고, 그 관계 성청(省序)은 후생 노동성, 법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대법원등 다수이다. 각 성청이 재편되기 전의 자료이지만, 1997년에 발행된『援護50年史』에 의하면 중앙 성청만으로도 9성청 14부국이다.<sup>24)</sup> 따라서 잔류일본인문제에 대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서는, 기본방침을 확립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책정해서, 실행조직과 연락조직을 정비하는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중국잔류일본인 문제는 국민적과제로 이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동안 관련 법률과 각료결정과 각료회의도 없이 후생성 국장통지 및 관계성청의 과장권한에 의해서 처리되어왔다.

정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1994년이 되어서야 겨우 ‘자립지원법’<sup>25)</sup>이 제정된다. 그렇지만 관계행정당국은 이 법률은 행정시책을 법문화한 것에

24) 厚生省社会・援護局(1997)『援護50年史』、p.694

25) 자립지원법은 중국방인에 대한 시책을 국가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지나지 않다고 공언하며, 법률제정이후 시책의 총 점검 및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sup>26)</sup> 원칙적으로 행정당국은 ‘자립지원법’에 기초해서, 행정적으로 기본방침과 종합시책을 세워야 하지만, 여전히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잔류일본인문제를 책임지고 주관해야하는 주관관청이 없고, 관련 부서만 많다보니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절차적인 복잡함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후생노동성원호국이 있지만, 원호국은 중국잔류고이나 부인문제에 대한 각관계성청의 연락조정의 창구에 지나지 않았고, 관계성청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기관이나 조직은 아니었다.<sup>27)</sup> 잔류일본인문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책임을 다해야하는 ‘국민’의 문제임에도 일관부서조차 설치하지 않았던 일본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중국잔류일본인에 대한 국가의 제도와 시책이 잔류일본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국적문제와 신원보증인·신원인수인 문제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법무성은 중국잔류일본인은 원칙적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그것에 기초하여 시책을 펼쳐왔다. 신원미판명고아(身元未判明孤兒)도 예외 없이 외국인등록을 강요받았다. 호적이 남아있는 신원판명고아(身元判明孤兒)나 잔류부인도, 중국적을 취득하면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현존하는 호적조차 박탈했다. 이것은 ‘일본국민은 자기의 뜻에 따라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때에는 일본의 국적을 상실 한다’라고 하는 국적법의 해석에 의한 것이다.

또한 법무성은 잔류일본인을 외국인으로 적용해, 귀국할 때 원칙적으로 ‘신원보증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신원미판명고아는 물론, 신원이 확인된 고아도 친족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할 수 없는 일본인은, 일본인이지만 귀국이 어려웠다. 후생성은 신원미판명고아에 대해 우선 입국을 인정하고 입국해, 후생성이 지정한 신원인수인에게 신원보증인을 겸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을 꾀했지만, 신원판명고아에 대해서는 친척이 신원보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여전히 요구되어 판명고아가 오히려 귀국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판명고아에 대해서 ‘특별신원보증인’제도를 만든 것은 1989년이 되어서이다. 이처럼 중국잔류일본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신원보증인’이나 ‘신원인수인’의 익을 요구했던 벽이 잔류고아와 부인의 조국귀환을 방해하고 늦추는 방해의 요인이었다.

1956년, 일본 내에서는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라는 프레즈가 유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잔류일본인은 일본사회에서 서서히 망각되어가고 있었다. 그 원인에는

중국잔류방인 등의 원활한 귀국의 촉진 또는 영주귀국후의 자립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유기적인 연계 하에 책정하거나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시책의 확립과 관계성청의 유기적인 연계를 요하는 중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다.

26) 麂谷聰(2009)「中国残留日本人支援施策の展開と問題点」『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勉誠出版

27) 厚生省社会・援護局(1997)『援護50年史』、p.694

일본정부의 법률적인 조치가 있었다. 후기 집단귀환이 종결된 다음해 1959년 3월, 1년도 지나지 않아, ‘미귀환자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 미귀환자의 대다수가 종전 전후의 혼란기에 소식이 끊어졌고, 조사구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에 비출 때, 부재가족의 심정을 참작하여, 후생대신(厚生大臣)이 민법 제30조에 의해, 그 유족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특별의 조치를 한다고 후생성은 설명한다.<sup>28)</sup>

뿐만 아니라, 미귀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후생성은 ‘자기의사 잔류자’의 인정도 진행했다. 1986년 3월 8일 아사히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소식은 있어도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당시의 상황 하에서 귀국의지를 나타내지 않았던, 일부의 잔류부인들이 대상. 이런 사람들도 미귀환자명단에서 지워졌다.

195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재가족원호법’에서는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귀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1945년 9월 2일 이후에 있어서, 자기의 의사에 의해 본邦(本邦)에 있는 자’는 미귀환자의 범위로부터 제외한다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sup>29)</sup> 이 법의 원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률은 미귀환자가 처한 특별한 상태를 감안하여, 국가의 책임에 있어 그 가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미귀환자가 귀환 할 경우에 귀향 여비 지급 등을 실시하여 원호하고자 한다.<sup>30)</sup>

그러나 이 법으로 미귀환자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사로 귀환하지 않은 ‘자기의사 잔류자’로 분류되고 결국 호적에서 말소 되었다.

중일 관계가 단절되자마자, 준비된 듯 급속히 진행된 ‘미귀환자 특별조치법’의 성립에 의해 최종 정보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도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는 후생대신(厚生大臣)이 ‘전시사망선고’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사태의 중요성 때문에 법적 검토 외에 조위금

- 28) 1959년에 제정된 미귀환자에 관한 특별조치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을 미귀환자로 정하고 있다. 중국 본토, 필리핀제도 그 외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각각 해당 지역 별로 정령으로 정한 날 이후 생존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있는데 제반 사정으로 보아 이미 사망했다고 추측되는 사람(1954년 9월 2일 이후 자신의 의사에 의해 귀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이날 이후에 자신의 의사에 의해 본방에 있던 자를 제외한다.)
- 29) 1953년 미귀환자부재가족원호법에서 미귀환자란, 미복원자 이외의 사람으로, 1945년 8월9일 이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사할린, 쿠릴 북위 삼십팔도 이북의 조선 관동주 만주 또는 중국 본토의 지역 내에서 생존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있고, 아직 귀환하지 않은 자.(자신의 의사에 의해 귀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1945년 9월 2일 이후에 자신의 의사에 의해 본방에 있던 자를 제외한다.)
- 30) 미귀환자부재가족원호법(<http://law.e-gov.go.jp/htmldata/S28/S28HO161.html>)

3만 엔, 은근법 적용, 군인이나 군속일 경우 야스쿠니 합사 등의 조치가 강구되었으나 ‘미귀환자 특별조치법’의 성립과 ‘전시사망선고’의 수순은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민주에 남겨진 많은 잔류여성들과 고아는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어린 시절 중국 가정에 입양된 고아들은 대부분 자신의 고유한 일본 이름도 잊어버렸다. 따라서 후생성이 가진 자료만으로는 생사를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중일국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잔류일본인들의 소식이 전해질 리 없었고, 생존확인기간 7년은 빠르게 지나갔다. ‘특별조치법’의 특별조치는 전시사망선고의 수순이 간략화된 것 일 뿐이었고, 오히려 전시사망선고를 촉진하게 된다. 이 법의 실행에 의해, 약 1만 3600명의 미귀환자가 전시사망선고가 내려져, 호적이 말소되었다.<sup>31)</sup> 또한, 중국에 잔류가족을 둔 부재가족은 국가의 집요한 설득과 위로금이라는 경제적인 수인을 이유로, 전시사망선고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가 개인의 생존여부를 결정한다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법률을 재정한 일본정부로 인해 많은 잔류일본인들의 이름은 호적에서 말소되고 묘표가 세워졌다. 일본전국의 각지에 척혼비 또는 위령비가 계속해서 건립되었고, 사자(死者)의 이름이 새겨졌다. 미나미 마코토는 이것은 과거의 만주개척민에 대한 위령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미 별씨 전후가 아니다’라는 일본사회 내에서 전후와의 결착을 위한 행위라고 해석했다. 사망 선고된 잔류일본인의 이름도 위령비에 새겨지고, 위패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잔류일본인의 존재는 정치 레벨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가족 레벨에 있어서도 조작적이며 계획적으로 망각되어 갔다.<sup>32)</sup>

이처럼 잔류일본인들은 일본사회로부터 엄격하게 배제되고 있었다. 또한 비판적인 시선과 당시의 반공(反共)풍조는, 잔류부인의 일본사회에서의 정착을 어렵게 했다. 56년 3월부터 57년 5월까지의 고향방문일본부인 1109명중, 그대로 일본에 영주한 것은 1할 남짓의 110명에 지나지 않았다.<sup>33)</sup> 결국 약 9할의 사람이 중국으로 재도항 했다. 그 중에는 가족이 중국에 있다는 이유로 재도항한 사람도 있었지만, 일본에 정주하고 싶어도,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었다. 고향방문에 수혜를 받은 일본부인의 경우 조차, 일본에서의 영주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았다. 고향방문 불가능했던 일본부인의 경우는 말할 것 까지도 없고, 일본에의 영주는 쉽지 않았다. 또, 혈육을 만나기 위한 고향방문도, 경제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인과 결혼한 일본부인들은 중국에서 ‘잔류’를 할 수밖에 없는 원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패전부터 국교 회복까지 27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 패전 직후 12세이던 잔류 고아와

31) 厚生省援護局編(1977)『引揚げと援護三十年の歩み』厚生省、p.201

32) 南誠(2006)「『中国残留日本人』の形成と記憶」『アジア遊学』85

33) 兵庫県民生部援護課編集(1954)『兵庫県未帰還者引揚運動史』兵庫県民生部援護課、p.70

13세이던 잔류 여성이라는 대략적인 구분법은 완전히 무의미했고, 잔류 고아와 잔류 여성의 귀국 문제는 똑같이 중국 잔류 일본인의 귀국 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잔류 여성에게 작용한 ‘국제결혼은 곧 자기 책임’이라는 편향(偏向)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여성의 영주귀국 문제는 여론으로부터도 잊히고 방치되기에 이른다.<sup>34)</sup>

잔류일본인은 폐전 국민이라는 절박한 현실과 대혼란 속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중국의 가정에 아내와 양자로 들어갔다. 그들은 잔류한 것이 아니라, 잔류일본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잔류를 강요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귀환에서의 배제와 일본사회에서의 망각.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사잔류인정’과 ‘전시사망선고’에 의한 ‘호적말살’ 등의 국가의 기민정책으로 그들의 존재는 일본사회에서도 지워져갔다.

일본 정부는 정부 스스로 악화시킨 중일 관계를 잔류일본인 귀환의 종결로 이용했으며, 중일 국교단절로 인한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정착시키려고도 했다. 그 결과 잔류일본인들은 사회에서 망각되어갔고, 이러한 일본정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정책으로 잔류일본인들은 후기귀환의 종결로부터 중일 국교가 회복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중국에 방치되었다. 중일국교가 재개 되어서조차도 일본정부의 여러 가지 제한된 정책은 그들의 귀환을 어렵게 했다. 잔류일본인에게 국가란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이 아니라, 국민을 잔류시킨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적 제도적 문제를 외면하고 원호를 저해하는 시책을 가진 기민의 성격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 4. 결 론

만주로부터의 귀환이 다른 해외 거류민지역에 비해서 늦어진 원인은, 소련의 대응이나 국공내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복잡해진 탓도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잔류일본인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구제의 노력에 태만했으며, 현지정착 및 국적이탈의 방침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만주에 있어서 다수의 중국잔류고아와 잔류부인이 남겨진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만주지역으로부터 귀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귀환이 중단되고, 1953년 3월의 북경협정에 의한 민간에 의한 귀환이 재개되었다. 나가사키국기사건에 대한 국가의 처리를 계기로 중일 국교는 전면 단절되고 귀환 역시 중단된

34) 이데 마고로쿠(井出孫六)저, 임성모 역(2012)『중국 잔류 일본인』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다. 일본정부는 1959년 3월, 미귀환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생존자 다수의 정보에도 불구하고 고아·부인을 포함한 중국잔류일본인 약 1만 4000여명에 대해서 전시사망선고를 내리고, 그들의 호적을 말소시켜 고아·부인의 귀국을 완전히 포기해버린다.

그 후, 1972년의 중일국교회복후에도, 일본정부는 고아의 혈육찾기나 귀국원호를 국가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 중국잔류일본인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 그러므로 국가의 책임과 잘못을 밝히는 것은 잔류일본인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기민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잔류고아와 잔류부인이 각 지에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차례로 취하됐다. 일본정부는 ‘중국잔류 일본인’ 생성의 원인을 제공했고, 지금까지 그들을 방치해 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잔류일본인들이 정부로부터 사죄 받는 것은 좌절되었다. 현무암은(2013)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일본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음으로써 이들이 남은 생애라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한 성과를 얻은 것은 주목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sup>35)</sup> 그러나 새로운 지원책이 나왔다고 해서 잔류일본인을 형성하게 했던 일본정부의 잘못과 민주귀환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맞바꿀 수는 없다.

중국잔류일본인 문제는 이미 귀국 지원 문제에서 귀국한 후의 생활 안정 지원 문제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안정을 위한 적절한 타협점을 찾다보니 본질적인 국가의 사과를 받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일에서는 한 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중국잔류일본인에서 귀국자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삶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했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에는 정부의 사실상의 ‘기민정책’이 있었다. 일본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이 제시된 것은 이러한 기민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과거의 기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새로운 지원책으로 인해 중국잔류일본인은 당장의 고통스러운 생화의 불안정에 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잔류일본인 문제는 단순히 전후의 뒤늦은 귀환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왜 잔류고아가 생겨났는지, 왜 고아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국가의 책임과 그 역사를 계속해서 물을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가 국가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잔류일본인의 존재의 의의와 조국에서의 자신들의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35) 현무암(2013)『중국잔류 일본인을 들러싼 포섭과 저항 : 본국 귀국자라는 다중적 아이덴티티의 가능성』『일본비평』제8권, p.145

### 【参考文献】

- 김영숙(2013)「일본의 패전과 만주지역 일본인의 귀환」『동학사학연구』제122집, p.282  
송석원(2013)「일본의 중국잔류일본인 = 중국귀국자 지원 정책」『한국동북아논총』제69호, p.178  
오일환(2007)「1950年代 在中日本人 引揚問題를 둘러싼 中日間협상」『한일민족문제연구』  
이데 마고로쿠자, 임성모 역『중국 잔류 일본인』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107-139  
이연식(2014)「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동북아역사논총』46호  
현무암(2013)「중국잔류 일본인을 둘러싼 포섭과 저항 : 본국 귀국자라는 다중적 아이덴티티의 가능성」『일본  
비평』제8권, p.145  
蘭信三(2009)『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勉誠出版, pp.22-23, p.49  
庵谷磐(2009)『中国残留日本人支援施策の展開と問題点』『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勉誠出版, pp.223-224  
厚生省援護局庶務課(1963) 記録係『統統引揚援護の記録』、p.456  
厚生省援護局編(1977)『引揚げと援護三十年の歩み』厚生省, p.201  
厚生省社会・援護局編(1997)『援護50年史』厚生省, p.694  
満州開拓史刊行会編(1980)『満州開拓史』、pp.436-437  
南誠(2006)「中国残留日本人の形成と記憶」『アジア遊学』85  
南誠(2009)「想像される中国残留日本人一国民をめぐる包摶と排除」『中国残留日本人という経験』勉誠出版  
田恒主編(1994)『戦後中日関係史年表:1945-1993』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p.38  
兵庫県民生部援護課編集(1954)『兵庫県未帰還者引揚運動史』兵庫県民生部援護課、p.70

---

논문투고일 : 2017년 12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9일

## <要旨>

### 전후 중국잔류일본인의 귀환에 관한 연구

- 기민정책을 중심으로 -

이초희

폐전 후의 극심한 혼란과 전후 중일관계 속에서 중국잔류일본인의 발생 원인이 된 기민(棄民)정책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전후(戰後) 국민을 버린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출발점이며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들의 존재 의의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원책'은 일본정부와 일본에 귀환 한 중국잔류일본인의 이도저도 아닌 타협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기민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인정 없이는, 잔류일본인의 존재의 정당성은 부정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기민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중국잔류 일본인 귀환과정이라는 역사적 사례를 다루어 중국잔류일본인의 형성 원인이 된 일본정부의 기민정책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일본사회에 되묻고 있는 전후 기민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잔류일본인 문제의 중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 A Study on the Return of Japanese Who remained in China after World War II

- Focusing on Rejection policy -

*Lee, Cho-Hee*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rejection policy that effected the Japanese who remained in China after World war II. It is the starting point to identify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 that abandoned the people after the war.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ir being identity.

The new support program can only be said to be the result of a compromise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eople returning from China. Without the apology and acknowledgment of the nation, the legitimacy of the existence to the remaining Japanese is irrelevant. Therefore, it is considered significant to examine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of rejec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historical case of the Japanese Who remained in China after World War II, examining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which is the cause of the forma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China, and discusses the causes to the Japanese society. I would like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the Return of Japanese Who remained in China.